

엄벌 탄원서 (의견서)

이 름

주 소

연락처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만남을 요청하였던 청년 노동자가 스물네 번째 생일을 맞은 지 불과 며칠 후인 2018년 12월 10일, 자신의 일터에서 낙탄 제거, 기계이상을 점검하는 업무를 하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고, 조명도 없는 깜깜한 그곳에서 그가 죽어갈 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에서 18세기 산업혁명 시대에나 있을법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경악했습니다.

고 김용균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의 노동안전”에 관한 큰 반향을 가져왔고, 김지형 전 대법관이 이끄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결과 이 사건의 피고인들 전부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상조사 결과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려진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여전히 자신의 범죄혐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항에서 승객들의 캐리어를 내보내주는 컨베이어벨트를 석탄을 실은 컨베이어벨트에 비교하며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전체적으로 불을 밝히는 것보다는 랜턴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확인하기 좋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고인의 죽음에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하기는 커녕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라고 이야기되는, '도급', '하청' 등 다층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시스템은 원하청간 원활하지 못한 소통의 문제로 위험한 상황에 제때 대처하지 못하고, 도급비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비용절감'을 이유로 2인1조와 같은 인원충원은 비효율적인 일로 치부됩니다. 또한 안전설비에 대해 원청은 책임을 회피하고, 하청사에게는 권한이 부재한 현실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일하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1~9월에만 1635명, 하루 평균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고용부 '2021년 9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공표).

전기를 만드는 화력발전소에서 한 청년이 전등하나 없이 휴대폰으로 불을 밝혀 일하다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참 후에 발견되었고, 그의 죽음에 책임을 지려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고, 아무도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2018년 고 김용균의 사망 이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실제로 산업안전법 전면 개정에도 불구하고 석탄 발전소 등의 도급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제정되지 않았고, 2021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기업의 대표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13~2017년 산재 상해·사망사건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연인 피고인 2932명 중 징역 및 금고형은 86명(2.93%)에 불과했고 대부분 집행유예 981명(33.46%)나 벌금형 1679명(57.26%)에 그쳤습니다. 징역 및 금고형의 경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비중이 높았고, 벌금 평균 금액은 자연인이 420만원, 법인은 448만원이었습니다.

500만원도 채 되지 않는 벌금을 내고난 후 사업주들이 반성을 하고 일터의 현실이 바뀌 있을까요? 위 통계자료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하여 과실범죄라며 매우 낮은 수준의 양형으로 처벌하였고, 그 결과는 하루 평균 6명이 일터에서 사망하는 것입니다. N번방의 책임이 법원에 있다고 하는 것처럼 산업재해사망의 책임도 법원에 있는 것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엄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권한과 책임에 대해 분명하고 엄정하게 처벌이 내려져야 그 권한과 책임이 더욱 분명해 질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조치에 신경을 쓰지 않는 일이 멈출 것입니다.

아무쪼록 재판장님께서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결과와 같이 엄한 처벌을 내려주셔서 다시는 산업재해로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기업과 기업의 대표자가 이 사회에서 설 수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바랍니다.

2021년 12월 일